

제298회 임시회
2011. 3. 17.(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정 책 복 지 위 원 회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3. 17.(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2월 25일
- 회부일자 : 2011년 3월 3일

다. 상정일자 : 2011년 3월 10일

-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정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 도정배심원제의 기능을 포괄하고 도의 주요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도정 정책자문단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 윤양한)

- 충북도 주요 정책의 입안이나 정책결정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정책자문단 조례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행함으로써
- 기존에 운영돼 오던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도와는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도정배심원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정예비배심원단”이란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 주요정책 결정 및 처분 등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심의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도민들을 말한다.
2. “도정배심원단”이란 도정예비배심원단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도민들을 말한다.
3. “도정배심원단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란 도정배심원제 시행 대상 업무인 행정심판, 행정처분, 주요정책결정 사무를 처리하는 충청북도 소관 실·과·팀을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정배심원단 심의 대상) ① 도정배심원단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사항 결정의 경우
 2. 도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결정의 경우
 3. 행정심판 사건 중 청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사전 예고 시 처분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운영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청구자 또는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도정배심원제의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3. 행정심판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4.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
 5. 그 밖에 도정배심원제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4조(도정예비배심원 선정)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시군별 인구비례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500명 이내의 도정예비배심원을 위촉한다.

② 도정예비배심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는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안별 도정배심원단 구성)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자 또는 행정처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안별로 도정배심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정배심원단의 구성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6조(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 ① 도정배심원단 운영은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도정배심원단의 대표는 도정배심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는 도정배심원단 회의를 주재한다.

③ 도정배심원단의 의견결정은 출석 배심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7조(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 ① 운영부서의 장은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서를 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도정배심원의 제척) 도정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

제9조(심의결과 보안 등) ① 도정배심원은 심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7조의 도정배심원단 심의·운영 결과를 도정배심원제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5조에 의거 심의에 참여한 도정배심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